

울산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23-5호

# 울산신용보증재단 기간제 근로자(체험형 인턴제) 공개모집 공고

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(체험형 인턴제)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년 6월 5일

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

# 울산신용보증재단 기간제 근로자(체험형 인턴제) 공개모집

1. 공모직위 : 기간제 근로자(체험형 인턴제) 9명

2. 계약기간 : 약 6개월(2023.07.01. ~ 2023.12.31.)

## 3. 채용분야

- 신용보증, 채권관리, 경영지원, 소상공인 교육·컨설팅 등 업무

## 4. 근무지

- 재단 본·지점 및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(울산광역시 내)

## 5. 자격요건

가. 학력·전공·성별 제한 없음

나. 청년(만15세~만34세)으로서 재단 「인사규정」제14조에 의거 채용제한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.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
※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2.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,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3. 울산 소재의 학교(초·중·고 또는 대학) 졸업 또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

- [별지 1호] 결격사유 참고

## 6. 우대사항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가점 부여 단, 해당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

## 7. 근로조건

| 월급여   | 복리후생       | 근무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매월 2,286,000원<br>(중식대(월 15만원) 및<br>출퇴근보조비(월 15만원) 포함) | 4대<br>보험가입 | 주 5일 근무<br>(평일 8시간 : 9시 ~ 18시) |

## 8. 채용절차 및 심사방법

| 전형단계                 | 실시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기준   | 배점   | 선발배수                  | 합격자 발표일자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서류전형<br>(서류접수)       | *23.06.12(월)<br>~06.20(화)<br>(13시까지) | 결격여부만 판단   | -    | -                     | *23.06.21(수)<br>14시 이후 |     |
| 면접전형                 | *23.06.23(금)<br>오후 2시                | 아래의 항목을 면접위원이<br>평가 후 산술평균한 점수<br>(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) 산정 | 100점 | 9명<br>*예비합격자<br>3명 별도 | *23.06.26(월)<br>14시 이후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 분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자질 및 핵심가치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20점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분야지식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30점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사발표의 정확성과<br>논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20점 |
| 창의력 · 기타발전가능성        | 3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신원조회 이상여부 및 최종합격자 발표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-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*23.06.29(목)<br>14시 이후 |     |

## 9. 전형별 채용일정

| 구 분     | 일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고기간    | 2023. 6. 5(월) ~ 2023. 6. 20(화)  |
| 접수일자    | 2023. 6. 12(월) ~ 2023. 6. 20(화) |
| 면접일자    | 2023. 6. 23(금)                  |
| 신원조회 확인 | 2023. 6. 28(수) 한                |
| 합격자 발표  | 2023. 6. 29(목)                  |
| 출근일자    | 2023. 7. 3(월)                   |

※ 세부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 10. 접수방법

- 재단 홈페이지(www.ulsanshinbo.co.kr.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## 11. 제출서류

가.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
나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, 사본을 제출 할 것

| 제출 서류 목록   | 비고          |
|--|-------------|
| 1. 입사지원서   | 공통          |
| 2.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 |             |
| 3.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 |             |
| 4.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)  |             |
| 5.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주민등록등·초본 또는 졸업증명서(지역인재 확인용)<br>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로 발급하여 제출 |             |
| 6. 신분증   | 최종합격자<br>제출 |
| 7. 가족관계증명서(결격사유 조회용)   |             |
| 8. 국가건강검진 결과(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)   |             |

## 12. 문의처

-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 추화량 차장 (T.052-283-8310, F. 052-710-1128)

## 13.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

가.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 시행

나.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3명을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하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하면 차순위자 순으로 입사 기회 부여

## 14. 동점자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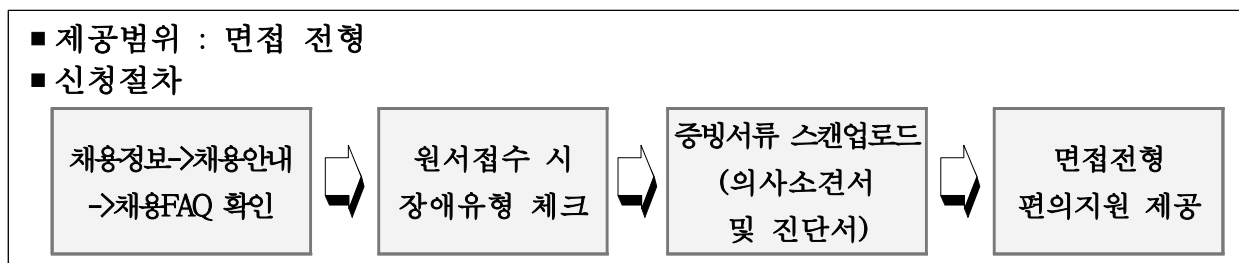
- 동점자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. 다만,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 평가항목 “기본자질 및 핵심가치”, “전문분야지식”, “창의력, 기타 발전가능성”, “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” 순으로 고득점자로 결정

## 15. 주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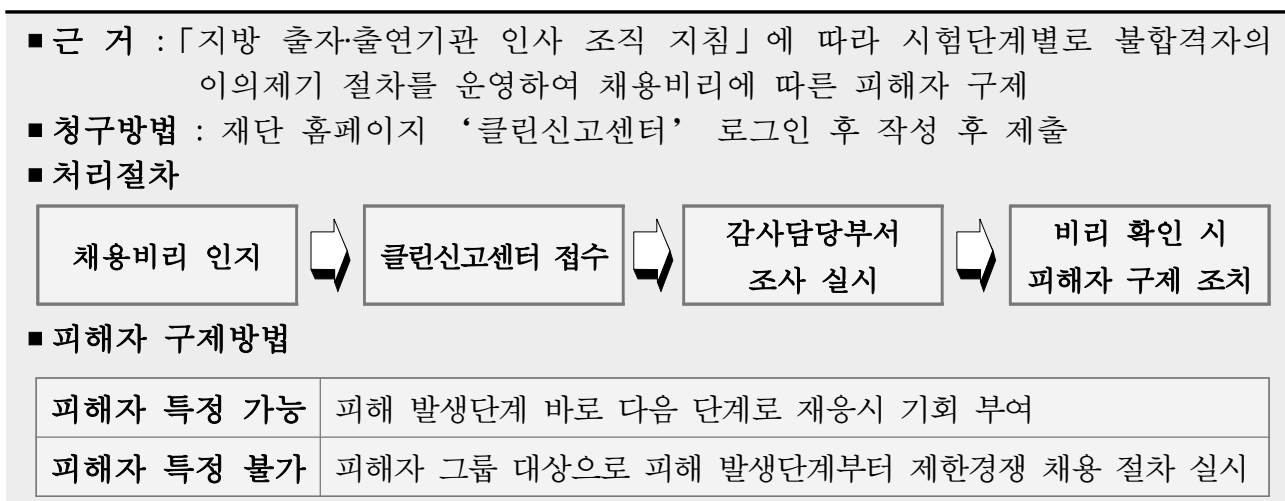
- 가. 지역인재 채용 관련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시 ‘탈락’ 처리
- 나.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사항, 자격사항, 경력사항 등 최종 합격 시 증빙
- 다. 허위사실 기재 및 채용비리 사실 확인 즉시 ‘탈락’ 처리 후, 민·형사상 조치 예정
- 라. 「공공기관」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관계, 학력 등 작성 금지

## 16. 지원자 권리 보호제도 안내

- 가.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



- 나. 이의 제기 절차



## 17. 기타사항

- 가. 응시자의 부적합 사유 또는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나. 제출서류 중 서류 발급기준일(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) 미준수자는 보완 요청 없이 탈락될 수 있음
- 다. 제출서류가 허위내용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분 및 추후 입사 불가
- 라.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,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- 마. 전형별 결과는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개별 통지(문자발송 등) 합니다.
- 라.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 (담당자 추화량 차장, 052-283-831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8.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

- 가. 당 재단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최종합격자 제외)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함.
- 나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재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
- 다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당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.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재단이 부담
- 라. 당 재단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간 채용서류 보관하며,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

## 19.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관련 안내사항

가. 면접시험 당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 영상 면접으로 응시 기회 부여

\* 서류합격 발표 후 비대면 영상 면접 응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

나. 면접시험 지원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당일 출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를 실시하며, 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」 의심 증상 있으면 응시 제한\*

\* 37.5℃ 이상의 발열 및 기침·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

울 산 신 용 보 증 재 단

# 결격사유

| 구분   | 세부내용  |
|--|---|
| <p>지역인재<br/>채용관련요건<br/>(세부내용 중<br/>하나에<br/>해당하는 자)</p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<br/>※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</li> <li>2.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,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</li> <li>3. 울산 소재의 학교(초·중·고 또는 대학) 졸업 또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</li> </ol>   |
| <p>「재단<br/>인사규정」<br/>제14조에<br/>해당하지<br/>아니한 자</p>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 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</li> <li>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</li> <li>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</li> <li>5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</li> <li>6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</li> <li>7. 병역을 기피한 자</li> <li>8.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된 자</li> <li>9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9의 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</li> <li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li> <li>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/li> </ol> |